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재무제표

별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 5 (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4 (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목 차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5

손익계산서 ----- 6

주석 ----- 7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독립된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독립된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계속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59길 27, 3층(신사동, J&G빌딩)

세 연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주 민 구

2020년 3월 16일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0년 3월 1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제 5 (당)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제 4 (전)기

2018년 01월 0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이사장 이 재 수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3층(교동, 춘천시청별관)

(전 화) 033-250-48720

재 무 상 태 표

제 5(당)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 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457,745,210		1,271,979,916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0,747,342		271,979,916	
(2) 단기투자자산	1,156,997,868		1,000,000,000	
II. 비유동자산		10,764,000,000		9,764,000,000
(1) 투자자산		10,764,000,000		9,764,000,000
1. 장기성예적금	10,764,000,000		9,764,000,000	
자 산 총 계		12,221,745,210		11,035,979,916
부 채		-		-
부 채 총 계		-		-
자 본				
I. 기본순자산		11,920,997,868		10,801,312,414
II. 보통순자산		253,047,342		227,462,254
1. 기타이익잉여금	253,047,342		227,462,254	
III. 순자산조정		47,700,000		7,205,248
1. 미전입기부금수익	47,700,000		7,205,248	
자 본 총 계		12,221,745,210		11,035,979,91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221,745,210		11,035,979,916

주석 참조

운 영 성 과 표

제 5(당)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단위 : 원)

과 목	제 5(당) 기		제 4(전) 기	
I. 사업수익		388,261,776		475,214,044
(1) 고유목적 비수익사업		180,000,000		283,760,841
1. 출연금수익	-		102,466,841	
2. 기부금수익	180,000,000		181,294,000	
(2) 고유목적 수익사업		208,261,776		191,453,203
1. 투자자산수익	208,261,776		191,453,203	
II. 사업비용		345,243,250		247,859,030
(1) 고유목적 비수익사업		345,243,250		247,859,030
1. 분배비용	224,135,440		195,520,180	
2. 인건비	87,146,290		35,474,800	
3. 사무관리비	16,593,170		12,817,590	
4. 공공운영비	15,504,640		3,424,710	
5. 행사운영비	1,863,710		621,750	
III. 사업이익		43,018,526		227,355,014
IV. 기타수익		2,566,562		107,240
(1) 분배비용환입	2,228,680			
(2) 잡이익	337,882		107,240	
V. 기타비용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585,088		227,462,254
VII. 법인세비용		-		-
VIII. 당기순이익		45,585,088		227,462,254

주석 참조

주석

제 5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 4 기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1.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의 개요

재단법인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그 자녀, 관내 소재 대학생으로 학업을 위해 춘천시 주민등록 이전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5년 중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강원도 춘천시 삭주로 3, 3층(교동, 춘천시청별관)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3) 우수한 지역인재 발굴 육성
- (4) 교육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재단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정하여져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이 작성한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 재무제표 구성요소 :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식 등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 하며,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익 및 비용 : 사업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되,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금주의(재단의 재산으로 전입이 확정되지 않은 기부금 등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입과 재단의 재산으로의 전입이 확정된 시기)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 인식기준 : 사업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하되,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금주의(재단의 재산으로 전입이 확정되지 않은 기부금 등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입과 재단의 재산으로의 전입이 확정된 시기)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소득 등의 수입액 중 향후에 사업수행비용 및 일반관리비용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 및 부채로 계상하여 법인세 부담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 기부금으로 수입된 재산(현금 및 현물 등) 중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될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자본의 분류 : 재단의 자본은 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잉여금 및 적립금)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 평가손익 등의 경과계정은 순자산에 가감할 항목으로서 "순자산조정"으로 분류하여 자본에 포함됩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재단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단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

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의적 회계정책

재단이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단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 정형화된 상품등을 말하며,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유형자산

재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시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원가에 재단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과의 교환으로 받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구입가격에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고,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치가 비슷한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받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다른 종류의 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고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5) 정부보조금

재단은 국가 및 지방정부 등으로 부터 수취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였다가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거쳐 동 자산의 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상계된 보조금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6) 총당부채

재단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7) 수익

재단의 사업수익 중 출연금수익과 투자자산운용수익 등은 발생주의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기부금에 대하여는 현금주의(현금이 수입되었으나 재단의 재산으로의 전입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그 전입이 확정된 때)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익은 보조금수익(국비), 보조금수익(도비), 보조금수익(기타)로 분류되고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하되, 진행기준은 보조금 관련 사업비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수익은 동 기부금이 실제로 수입된 때를 기준으로 수익인식 하고 있습니다.

(8) 자산손상

금융자산, 채고자산 및 중단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제외한 재단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 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 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합니다. 만약,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 자산집단을 의미합니다.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손실(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

재단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서 동연금을 불입하는 시기에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종 류	금 액	사용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47,700,000	기부금 전입 예정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188,626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금액
단기투자자산	정기예금	1,154,809,242	"
장기성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10,764,000,000	"
합 계		11,968,697,868	

5. 분배비용

사업비용 중 분배비용은 재단의 주된 목적활동의 일부인 장학금지급액과 교육복지사업비 지급액으로서, 당기중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장학금 지급	194,135,440
교육복지사업비	30,000,000
합 계	224,135,440

6. 기본재산 및 기본순자산

당기말 현재 재단의 기본순자산을 구성하는 기본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종 류	금 액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2,188,626
단기투자자산	정기예금	1,154,809,242
장기성예적금	저축성보험 등	10,764,000,000
합 계		11,920,997,868

(주) 당기말 현재의 기본재산은 운용수익 확대를 위한 금융상품 추가 취득 등으로 인하여 기본순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7. 순자산 변동에 관한 사항

당기 중 순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과 목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합 계
I. 당기초	10,801,312,414	227,462,254	7,205,248	11,035,979,916
II. 기본순자산 편입				
1. 전기미전입기부금수익 편입(주1)	7,205,248	-	(7,205,248)	-
2. 편입자산 오류수정(주2)	12,627,580	(20,000,000)	-	(7,372,420)
3. 시비출연금	1,000,000,000	-	-	1,000,000,000
4. 기부금	97,664,000	-	-	97,664,000
5. 후원회비	2,188,626	-	-	2,188,626
6. 당기 미전입기부금수익	-	-	47,700,000	47,700,000
III. 당기순이익	-	45,585,088	-	45,585,088
IV. 당기말	11,920,997,868	253,047,342	47,700,000	12,221,745,210

(주1) 전기 미전입기부금수익은 축협계좌에 포함되어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었음.

(주2) 축협계좌에서 발생한 순자산변동으로 2019년 이자수익금액 167,172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었음.

8. 법인세비용

재단은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출연금 및 기부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목적사업 또는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투자자산 운용결과로 수입되는 이자수익 등)에 한하여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와 당기 중 재단이 운영하는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으며, 이자소득이 세법상 수익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실제 재단이 부담할 법인세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재무제표 확정일

재단의 재무제표는 2020년 2월 24일자 이사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